

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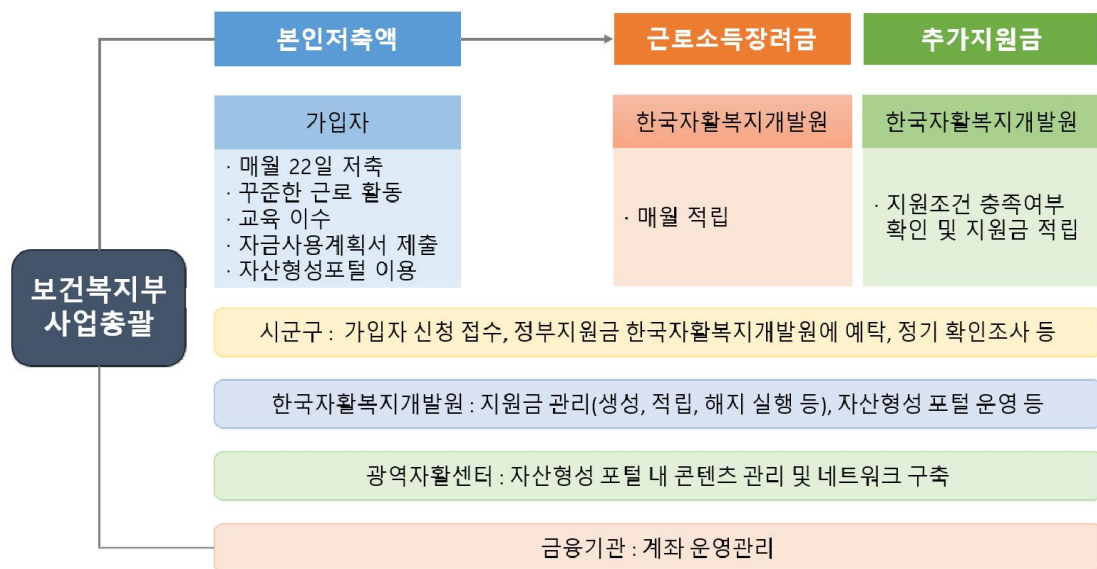
청년내일저축계좌

1 추진 배경



-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
-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
-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

2 추진 체계



3 지원대상 및 내용



1 가입대상

- 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

① 연령

-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~ 만 39세 이하
 - *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
② 근로·사업소득 및 근로활동

-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·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
 -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
 -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
 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」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'근로소득' 및 '사업소득'

③ 가구소득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
 - *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,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

Ⅰ 지원대상 기준

구분	차상위 이하
가구소득	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연령	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소득기준	월 10만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
지원액	매월 30만원

※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/ '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신규모집 중단

Ⅰ 산출 기준

구분	산출 기준
가구소득	• 적용: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• 산출: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환산액) 산정 ※ 가구원 산정 시 ① 보장이 있는 경우: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 ② 보장이 없는 경우: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,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(원가구인 부모, 형제, 자매 등 재산조사 미실시)
소득기준	• 적용: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 확인 • 산출: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% 근로·사업소득 반영(일명 “세전”)

② 가입 및 유지기준

Ⅰ 2026년 기준 중위소득, 가입 및 유지기준

(단위: 원/월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¹⁾	2,564,238	4,199,292	5,359,036	6,494,738	7,556,719	8,555,952	9,515,150
가입기준 ²⁾ (기준 중위소득 50%)	1,282,119	2,099,646	2,679,518	3,247,369	3,778,360	4,277,976	4,757,575
유지기준 ³⁾ (소득상한)	5,359,036	5,359,036	5,359,036	6,494,738	7,556,719	8,555,952	9,515,150

1)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,198원씩 증가

2)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3) 유지기준: 청년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- (유지기준) 소득상한은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1·2·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), 확인조사 통해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



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(근로·사업소득)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

- (근로소득)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「고용·임금 확인서(별지 제20호서식)」, 급여명세서,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,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(시군구 통합조사팀). 단,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, 객관성 판단 필요(고용·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)
- (사업소득) 농림축산업·어업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「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」를 제출,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(시군구 통합조사팀). 단,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, 객관성 판단 필요
 - ▶ (농림축산업 소득)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
(예)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 +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
* 발급처 :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
 - ▶ (어업소득)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
(예)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 + 수협이 어가별 위판기록,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
* 발급처 :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
- 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(시군구 통합조사팀)
- 단,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

-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인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 가능
- 희망저축계좌 I·II에 참여 중인 가구원(가입자 제외)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
- 가입기간은 3년, 군입대자 및 임신·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,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특별 적립중지(2년 이내)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자동 연장*
 - * 단,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·적립



군입대자, 임신·출산으로 인한 퇴직자, 육아휴직자 특별 적립중지(2년) 선택사항

- ① 적립중지(2년)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
 - 임신·출산으로 인한 퇴직자(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, 육아휴직자(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
 - '적립중지(2년)'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
 - '적립중지(2년)' 기간 중 가입자 요청에 의해 적립중지 해제가능하나, 이후 적립중지 신청 불가
- ② 적립중지(2년) 신청없이 적금납입을 희망하는 경우
 - 본인희망으로 '적립중지(2년)' 신청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
 - 저축 유지를 선택한 대상자는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하여야 하며,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 대상
 - ※ 누적 12개월 미납으로 해지사유 발생 후 적립중지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 불가

3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

- (지원요건)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 -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*
 - *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. 단,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(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)
 - ② 자립역량교육(총 10시간)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 - *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
- (소득환산의 예외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. 단, 총 사업기간(최대 3년)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

4 청년내일저축계좌 보장가구 산정

○ 조사 범위

- ① 타 보장이 있는 경우 (→ 해당 보장의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진행)
- ② 타 보장이 없는 경우 (→ 신청한 청년이 30세 미만인지 여부 구분)
 - ②-1 (30세 이상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범위 산정 방식으로 판정(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.31)
 - ②-2 (30세 미만) 부모와 주거·생계를 같이하는 경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범위 산정과 동일하게 판정

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

- 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
 -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
 -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(하숙)하고 있는 경우
 -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
 -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
 -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
- ②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(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)
 -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

- ②-3 (30세 미만) 부모와 주거·생계를 달리하는 경우, 해당 청년을 1인 가구로 산정, 청년 본인의 소득만 조사(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)

※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'①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'와 달리 기준 50% 미만 소득활동의 경우에도 인정

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교표

구분	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	청년내일저축계좌
30세 미만 중위소득 50% 이상 소득활동	청년(가구)만 보장가구 구성	좌동
30세 미만 중위소득 50% 미만 소득활동	원가구를 포함하여 보장가구 구성	청년(가구)만 보장가구 구성

4 가입 및 지원 절차



구분	대상	담당 업무
신청	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청년	〈신청방법: 본인직접 신청〉 - 온라인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• ‘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’ 작성 •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, 신청관련 서류 제출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 (‘참고’ 제출서류 목록 참조)
가입안내 및 접수	읍면동	• (방문신청)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(적립 및 해지요건) 등에 대한 안내 • (온라인신청) 신청 접수 •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
신청자 자격 확인	읍면동 시군구	•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*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* 근로활동 여부, 가구원 소득, 가구원 수, 중복가입 이력 등 •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특성, 저축지속가능성 심사* 실시 * 가구특성, 저축지속가능성, 사업이해도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(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)
선정 및 결과 통보	시군구	•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•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• 7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(통장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등) 안내 * 선정 즉시 통보하여 지연통보(계좌개설 기한 이후 참여 결정통지서 송달 등)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

구분	대상	담당 업무
선정 및 결과 통보	시군구	•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,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, 비대면(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)으로 계좌 개설 가능 •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(최소10만원 이상)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
계좌개설 및 본인저축	가입대상자	• 적금통장(가입자 소유)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•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~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
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	한국자활복지 개발원	•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• 지원금액 생성* 및 적립, 행복e음 전송(시군구에서 확인가능) * 가입자의 전출입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전출입 정보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적립기준 지차제 변경 •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,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
확인조사	시군구	• 연1회 이상 실시 및 자활정보시스템에 결과 전송 •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환수
해지 처리	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	• (시군구)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• (한국자활복지개발원) 계좌 해지처리 및 SMS(문자)를 통해 해지승인을 통보

5

본인적립금 및 지원금



1 본인적립금

- (본인적립금)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(매월 전월 23일~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
 - * 적용기간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까지
 - 매월 1일~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,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
 -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
 - 만기 이전 본인적립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(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)

2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

- 매월 본인적립금(10~50만원) 저축 시 10만원/30만원 매칭 지원
 -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30만원 정액 매칭
 -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10만원 정액 매칭
 -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, 가입 이후 계층이동(중위 50% 이하 ↔ 중위 50% 초과)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

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(1) 근로소득공제금

-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 소득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
 -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⁸⁾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·사업 소득공제⁹⁾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

8)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*

*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(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·사업소득공제) + 재산의 소득환산액[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×소득환산율]

- (계좌 개설)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
- (공제금 생성)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 생성하여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
 - 당월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월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하한(10만원) 초과 및 본인적립액 저축 시 생성
 - * 생계급여 미지급, 적립중지 기간, 소득하한(10만원) 이하 또는 본인적립액 미 저축시 공제금 미생성
 - 단, 지급정지(보류)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(추가 생성분)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
- (공제금 적립)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공제금 적립
 -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(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)
 -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
 -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팀에서 처리(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참고)
- (공제금 해지)
 - (지급)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지원 처리
 - *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
 - (환수) 해지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환수처리(자동입금)

9) 근로·사업소득공제 :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·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)



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

- ① (통장사업 담당자)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*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(국고보조금 정산)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
 - *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
 - (당해연도 원금) 당해연도 예산(지출)과목에 반납(여입) 처리
 - (과년도 원금) 당해연도 세입(보관금)으로 처리하되,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
 - ※ 단,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(보관금) 처리
 - (발생이자) 당해연도 세입(보관금)으로 처리
 - ※ 희망저축계좌 I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
- ② (생계급여 담당자)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
 - *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·예탁 절차안내 참조
- ③ (시군구 통장 사업팀)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
 - * 매월 통장 사업팀은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

(2) 탈수급장려금

- 가입 당시 생계·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·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
 - * 탈수급 기준은 p.43 “탈수급”요건 준용
 - **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
- (계좌 개설)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 당시 생계·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계좌 생성
- (생성 및 적립)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
- (해지 및 지급) 지급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
 - *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

(3) 내일키움장려금

-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*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하고,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
 - * 시장진입형, 시간제 자활근로,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, 사회서비스형 지원 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
- (계좌 개설)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
- (생성 및 적립) 지급 승인 시 '중앙자활자금'에서 일괄 적립
 - *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(시군구 승인) 기준으로 생성하므로,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승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내일키움장려금 생성
- (해지 및 지급)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

(4) 내일키움수익금

-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하고, 당월에도 참여하여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 시 당월분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적립
 - * 시장진입형, 시간제 자활근로,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, 사회서비스형 지원 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 - *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「자활사업안내 I」 참고
- (계좌 개설)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
- (생성 및 적립)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,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
 -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,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%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
 - * 매출 정산 후 분기(1월, 4월, 7월, 10월)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
 -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%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
- (추가지급/추가환수)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
 - (추가지급)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
 - (추가환수)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
 - * (지자체) 행복e음 '해지후정산' 처리, (지역자활센터) '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'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



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

- ① (지역자활센터)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
 - *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
- ② (시군구) 해지 확정
- ③ (지역자활센터)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
- ④ (한국자활복지개발원)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
 - (지급) 내일키움수익금(100%)을 전액 지급
 - (환수) 내일키움수익금(100%)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*로 자동입금,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* 정산 보고
 - *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의 지자체별 환수계좌
 - *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
- ⑤ (시군구)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
 - (통장사업 담당자)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
 - (자활기금 담당자)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* 요청
 - * 자산형성지원사업 위·예탁 절차 안내 참조

- (해지 및 지급)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
-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
 - (지급)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(100%)을 전액 지급
 - (환수)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(100%)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(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)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, 익년도 한국자활 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,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

(5) 시·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,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

-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·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
 - *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

6 지급 및 환수 기준



1 지급

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 지급

- (만기지급) 3년간 통장 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(총 10시간)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
- (중도지급)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,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
 -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,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
 - 해지가 결정된 달은 사유가 발생한 달을 의미, 따라서 업무처리 상 누락으로 사유를 사후에 발견한 경우에도 중도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
 -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

2 환수

본인적립금 + 이자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)

-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
 -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이 원칙이나, 시군구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%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(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)
-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
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

- 본인(가입자) 사망 시
- 압류·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
*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·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, 지자체(또는 지역자활센터)는 압류·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,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

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

❖ 자금사용계획서

- 지원금은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, 그 밖의 자활·자립에 활용 가능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)
-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
-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

Ⅰ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

구 분		해지사유	지 급 액	적용 금리
지급	만기	• 3년간 통장유지,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	• 적립된 전액지급 (본인적립금+근로소득장려금+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+이자) * 향후 재가입 불가	• 최초 약정이율
	중도	•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·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		• 최초 약정이율
환수	만기	•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,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	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+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) * 향후 재가입 가능	• 최초 약정이율
	중도	•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•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•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• 압류, 가압류 시 • 본인 사망 • 본인 요청 시 •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		•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

*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·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, 지자체(또는 지역자활센터)는 압류·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,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

3 해지절차

- 해지(철회) 신청서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한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시군구에서 직권해지 처리

※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

-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,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
 - ①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(전화, 우편 등)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,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
 - ②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,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
- (중도직권해지) 본인적립금 미납, 사망 후 환수해지, 가입 중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
- (만기직권해지)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(최대 6개월)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

해지처리 기관별 역할

구분	기관별 역할			
	가입자	시군구	지역자활센터	광역자활센터
지급	• [서식 4] 해지 신청서, [서식 9]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관할 읍면동 또는 복지사로 신청 • 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	• 통장 만기인 경우 :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 •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: 확인조사 최종 결과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 → 가입자에게 안내, 가입자 해지신청서등 검토 후 행복e음상 지급 승인 처리	• 자활사업 참여 가입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등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처리 • 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희망e음으로 발송 •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처리	• 장기미저축, 장기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 송부 업무 지원 • 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공문발송
환수	• [서식 4] 해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로 접수 • 해지 알림 문자 수신 후 본인 적금 해지(금융기관)	•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 사유 확인 •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대상 안내 *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,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	•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처리	

7

확인조사



- 시군구에서는 연 1회 이상 현 유지자 대상 (정기) 확인조사 실시
 - * 가입 후 3개월내 제외,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
 -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,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「고용·임금 확인서(별지 제20호서식)와 함께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근로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
 - * 적립중지 기간은 확인조사 대상기간에서 제외
 -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% 근로·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·부적격 여부 판정
 -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

정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가입자 관리

- **(지급)**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하는 경우(단, 1~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),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+근로소득장려금+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
 - *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 승인
- **(환수)**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,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며 근로소득장려금,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
 - 단,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%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

확인조사 절차

- ① (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) 소득조사 실시 →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
→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
- ② (지자체 (자활)사업팀)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→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·환수 대상(부적격자)에 대해 해지신청 등록하고 자활정보 시스템으로 전송
 - *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(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, 소급적립 가능)
- ③ (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) 기존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

참고 필수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목록

구분		제출서류		발급처	
필수 서류	공통	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		-	
		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			
		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			
		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		
		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			
		⑥ 소득·재산신고서			
		⑦ 가족관계증명서		*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, 읍면동 주민센터	
		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※ 대리신청시 위임장, 대리신청인·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	-	
	소득증빙	근로소득자			
		상시근로	⑨ 재직증명서		* 재직처 발급
		일용근로	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* 또는 고용임금확인서** ※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		* 근로복지공단 ** 직접작성
			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		* 직접발급
		사업소득자			
		기타 사업소득	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		* 직접발급
			⑬ 소득금액증명원*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 제출 가능		* 국세청 홈택스
		농림 축산업	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		* 직접작성
			⑮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		*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 하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** 지자체
			⑯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		-

구분		제출서류	발급처
	어업소득	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	* 직접작성
		⑱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	*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
		⑲ 수협이 어가별 위판기록	-
		㉔ 여촌계 자료 등의 여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	-
해당자만 제출	재산조사	• 전·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: 임대차계약서	-
	부채관련	• 법원판결문*, 화해·조정조서 •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	* 대법원 사이트
	가구특성	• 장애인/장애인부양: 장애인증명서	* 정부24, 주민센터
		• 한부모 가정: 한부모증명서	* 정부24, 주민센터
		• 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* 정부24, 주민센터
		• 조손, 다문화, 3자녀 이상 가구(신청자 자녀 기준),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,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: 등본	* 정부24, 주민센터
	저축지속 가능성	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(근로일수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경력증명서 • 고용임금확인서 •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* •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+ 급여이체 내역서	* 근로복지공단